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후견인 등 결격사유 삭제〉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21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3
IV.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7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5조)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제12조).

Ⅲ. 총괄 검토의견

□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취득,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2013년 7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개편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되었음.

[표]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화

금 치 산 자	피 성 년 후 견 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 정 치 산 자	피 한 정 후 견 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그런데, 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종 자격·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의 정비과정에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여 정비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음.

피후견인을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관계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각종 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게 되어 개편된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개별법상 자격·영업 등의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이 해당 직무에서 포괄적으로 배제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자격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에서 자격요건 미달, 업무 수행능력 미달 등의 경우에 자격이나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후견인 결격조항 외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후견인의 권리 제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피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표] 법률안 정비 주요내용

연번	법안명	정비 대상	개정 내용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상특수경비원/임원	피한정후견인 삭제
2	도선법	도선사	피한정후견인 삭제
3	선박평형수 관리법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피한정후견인 삭제
4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경매사 임명	피한정후견인 삭제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등록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7	어선법	어선중개업 등록	피한정후견인 삭제
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위원회 위원	피한정후견인 삭제
9	염업조합법	염업조합 임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10	항로표지법	사설항로표지관리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 업자	피한정후견인 삭제
11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피한정후견인 삭제
12	해상교통안전법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피한정후견인 삭제
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	피한정후견인 삭제
1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 · 정보업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 행업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15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단 임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16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1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법(해경)	수상구조사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 다만, 개정안과 같이 17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입법하는 방안과, 개별 법률로 구분하여 독자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피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 이외에도 대체 결격사유를 마련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경우에는 이하에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법률안 정비 주요내용 - 대체 결격사유 마련

연번	법안명	정비 대상	개정 내용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사유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 신설

IV.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5조)

□ 개정안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사유에 정신적 제약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2호 삭제 및 안 제37조의16제1항제1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제37조의3(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u> 에 해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 ----- ----- -----. ----- <u>제1호</u>

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② ~ ⑤ (생략)	<u>또는 제1호의2</u>-----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정신적 제약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피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면서 대체 결격사유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정신적 제약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면허취소의 사유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18